

더샵 중앙로역센터폴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741-415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인명		대구광역시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일정	26.05.04.(월)	26.05.14.(목)	26.05.15.(금)	26.05.18.(월)	26.05.22.(금)	26.05.26.(화) ~ 26.05.28.(목)
계약체결						
일정	26.06.02.(화) ~ 26.06.05.(금)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5.14.(목)	26.05.15.(금)	26.05.18.(월)	26.05.22.(금)	26.05.26.(화) ~ 26.05.28.(목)	26.06.02.(화) ~ 26.06.05.(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8-16)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주택과 -19463호(2026. 4. 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15-1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6~39층 2개동 총 299세대

특별공급 167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30세대, 신혼부부 69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좌)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74	01	084.9627A	84A	84.9627	32.3048	117.2675	60.9943	178.2618	12.9139	118	12	12	28	4	11	67	51	4
	02	084.9982B	84B	84.9982	31.2446	116.2428	61.0198	177.2626	12.9159	115	12	12	27	4	11	66	49	4
	03	084.9651C	84C	84.9651	31.5475	116.5126	60.9960	177.5086	12.9137	60	6	6	14	2	6	34	26	2
	04	142.5518	142	142.5518	55.8214	198.3732	102.3372	300.7104	21.5178	2	0	0	0	0	0	2	0	
	05	167.4697	167	167.4697	61.7457	229.2154	120.2257	349.4411	25.4531	4	0	0	0	0	0	4	4	0
합계										299	30	30	69	10	28	167	132	10

공급금액표											(단위: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호	층구분	공급세대수	분양가				계약금(5%)		잔금(9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15일 이내납부		입주지정일
84A	084.9627A	101동 2호, 102동 3호	6~9	8	256,625,616	513,924,384	0	770,550,000	5,000,000	33,527,500	732,022,500	
			10~18	18	259,269,970	519,220,030	0	778,490,000	5,000,000	33,924,500	739,565,500	
			20~29	20	261,914,325	524,515,675	0	786,430,000	5,000,000	34,321,500	747,108,500	
			30~38	13	264,562,010	529,817,990	0	794,380,000	5,000,000	34,719,000	754,661,000	
		101동 3호, 102동 2호	6~9	8	257,894,506	516,465,494	0	774,360,000	5,000,000	33,718,000	735,642,000	
			10~18	18	260,552,182	521,787,818	0	782,340,000	5,000,000	34,117,000	743,223,000	
			20~29	20	263,213,189	527,116,811	0	790,330,000	5,000,000	34,516,500	750,813,500	
			30~38	13	265,870,865	532,439,135	0	798,310,000	5,000,000	34,915,500	758,394,500	
		101동 1호, 102동 4호	7~9	6	254,122,493	501,797,507	0	755,920,000	5,000,000	32,796,000	718,124,000	
			10~18	18	256,741,308	506,968,692	0	763,710,000	5,000,000	33,185,500	725,524,500	
20~29	20		259,360,122	512,139,878	0	771,500,000	5,000,000	33,575,000	732,925,000			
30~38	13		261,982,298	517,317,702	0	779,300,000	5,000,000	33,965,000	740,335,000			
101동 4호, 102동 1호	6~9		7	257,934,734	509,325,266	0	767,260,000	5,000,000	33,363,000	728,897,000		
	10~18		18	260,593,890	514,576,110	0	775,170,000	5,000,000	33,758,500	736,411,500		
84B	084.9982B	101동 4호, 102동 1호	20~29	20	263,253,045	519,826,955	0	783,080,000	5,000,000	34,154,000	743,926,000	
			30~38	13	265,912,201	525,077,799	0	790,990,000	5,000,000	34,549,500	751,440,500	
			102동 5호	7~9	3	251,536,229	498,473,771	0	750,010,000	5,000,000	32,500,500	712,509,500
				10~18	9	254,132,048	503,617,952	0	757,750,000	5,000,000	32,887,500	719,862,500
		20~29		10	256,724,514	508,755,486	0	765,480,000	5,000,000	33,274,000	727,206,000	
		30~37		8	259,316,979	513,893,021	0	773,210,000	5,000,000	33,660,500	734,549,500	
		102동 6호	7~9	3	255,349,467	506,030,533	0	761,380,000	5,000,000	33,069,000	723,311,000	
			10~18	9	257,982,178	511,247,822	0	769,230,000	5,000,000	33,461,500	730,768,500	
			20~29	10	260,614,889	516,465,111	0	777,080,000	5,000,000	33,854,000	738,226,000	
			30~37	8	263,247,600	521,682,400	0	784,930,000	5,000,000	34,246,500	745,683,500	
142	142.5518		102동 5호, 6호	38	2	405,950,745	1,007,535,150	91,594,105	1,505,080,000	5,000,000	70,254,000	1,429,826,000
167	167.4697		101동 1호, 2호 102동 1호, 2호	34, 39	4	478,512,905	1,153,759,837	104,887,258	1,737,160,000	5,000,000	81,858,000	1,650,302,000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하나은행	547-910036-1190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2차 계약금·잔금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통장 입금(당첨 통·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계약금 입금 후 부부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301호 홍길동 → 10111301홍길동 / 101동 701호 홍길동 → 10107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로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익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일컫는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유서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유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유자로 명단 관리하여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최초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와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부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 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월(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통·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호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번호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청년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